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발생 대응요령 안내

1. 【 1단계 : 감염 증상 확인 】

○ **(어르신) 매일 1회 이상** 감염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촉탁의 등 방문 진료 시 관련사항 집중 체크

※ 증상 : 발열(37.5° 이상), 호흡기 증상(기침, 인후통, 호흡곤란 등)

○ 어르신 외박·외출 후 유 증상 여부 집중 확인

○ **(종사자)** 출 · 퇴근 등 외출 후 시설 내 활동 시 **발열 체크 및 소독제** 사용

○ **(외부인)** 호흡기 증상 및 발열 등 유증상자 **면회 자제** 요청

○ **(위생관리)** 공동 이용 장소를 수시 청소하는 등 **청결 유지** 및 감염 최소화

☞ **어르신, 종사자, 보호자 등 접촉 대상자별 감염 증상 발생 시 시설에 즉시 상황 공유하여 신속하게 대응 할 수 있는 연락 체계 마련**

< 종사자 병가 시 근무시간 인정>

▣『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』

· 제12조제1항제1호 라목(직원의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병가 : 연간 30일 이내)에 따라 유급인 경우 최대 8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인정. 기타 처방전, 진단서 등 사유 증빙 자료 보관(자세한 내용 세부사항 전문 참조)

2. 【 2단계 : 의심 대상자 관리 】

○ 감염증상 의심환자는 질병관리본부 고객센터 ☏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하여 사례 부합여부 확인(임상증상 및 역학적 연관성)

○ 감염증상이 있는 어르신은 간호사가 건강상태 사정 후 **감염 확진 전까지** 아침, 저녁으로 2회 이상 체온 확인 등 **관리 철저**

○ 의심환자 및 담당 종사자를 **독립된 공간에 격리**

○ 호흡기 에티켓을 준수하고 종사자에게 교육

< 호흡기 에티켓 >

▣ 호흡기 감염 증상이 있는 모든 종사자 및 어르신, 방문객들에게 적용

· 기침을 할 때, 입과 코를 휴지로 가린다.

· 사용한 휴지는 즉시 버린다.

· 기침하는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게 한다.

· 휴지나 마스크가 없는 상황에서는 옷의 소매로 입을 가리고 기침하게 한다.

· 호흡기 분비물과 접촉한 후 손 위생을 시행한다.

3. 【 3단계 : 진단 및 연락】

○ 감염의심 종사자 및 어르신(보호자 연락)은 의료기관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여부를 진단 ☞ 병원 치료

※ 완치시까지 시설과 격리되어 병·의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조치

○ 의심환자 및 확진자 발생 **즉시 관할 시군구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(관할 장기요양운영센터)**으로 전염병 발생 사실을 **유선보고**

[참고] 2020년1월28일 기준 확인된 정보 (출처:질병관리본부)

○ (병원체) 신종코로나바이러스(2019 novel Coronavirus)
○ (감염원) 동물로 추정하고 조사중
○ (전파경로) 동물 → 사람 → 사람 전파 추정
사람간 전파는 비말(호흡기 분비물) 전파 추정
가족간, 의료기간 내 2차감염 확인
○ (잠복기) 불확실
* 일반적인 포로나바이러스에 준해 2-14일 추정
○ (임상증상) 발열, 호흡기증상(기침, 호흡곤란), 폐렴
○ (위중도) 폐렴 보고사례 중 25% 정도가 중증/위중 환자
* 고위험군은 고연령, 기저질환자
○ (치명률) 약 4%